

#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

## 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3. 30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 3. 30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29호)
- 상 정 : 2007. 4. 16.(제11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사회복지과장 고병호)

#### 가. 제안이유

청소년들의 상담, 보호·지원, 긴급 구조,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1)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5조)

-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수행
-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
-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·지원 기능의 수행
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사업의 수행
-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

##### 2) 재원의 조성 및 운영경비 조달(안 제8조)

- 재원의 조성 : 출연금 및 수익금
- 운영경비 : 보조금 및 수익금

- 3) 임원은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함(안 제9조)
- 4) 이사회는 이사장(부시장) 및 이사로 구성함(안 제10조)
- 5) 「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(안 부칙)

#### 다. 관계법령

- 「민법」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청소년기본법」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
- 「국가청소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6조의2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각종 상담 및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, 보호대상, 청소년 보호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
-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청소년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

토론자 (발언자)	토론내용(발언내용)	비 고
이정희 위 원	■ 이사 선정시 신중을 기해 제대로 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	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: 없음